

1. 개정이유

한국벤처투자조합, 개인투자조합 등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로
이관된 조항과 관련된 서식이 시행규칙에 남아 있어, 불필요한 서식을 삭
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타법으로 이관된 조항과 관련된 서식 삭제
한국벤처투자조합 신고서·변경신고서(서식1), 개인투자조합 신청서(서식3)
및 등록원부(서식4)를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라. 기 타 : 1) 별첨

2) 입법예고 추진 예정

3) 행정규제 : 해당 없음

중소벤처기업부령 제 호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하고,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
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하고, 별지 제5호서식
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7호서
식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